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5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2.

발의자 : 임이자 · 장석춘 · 이양수
신보라 · 강석호 · 원유철
곽대훈 · 홍문종 · 문진국
지상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, 취급량·배출량,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·관리를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(안 제18조, 제41조제2항제1호,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).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4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) ①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(이하 “특정수질유해물질”이라 한다)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, 취급량·배출량, 배출량줄이기계획(이하 “배출량줄이기계획”이라 한다)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</p>	<u><삭 제></u>

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·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성명, 출입시간, 출입목적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
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1.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

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
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
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
배출허용기준 또는 「환경오
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
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
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
는 경우

제41조(별 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
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에 처한다.

1.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

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(생 략)

제43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 략)

2.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획을
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
로 작성한 자

제41조(별 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<삭 제>

2.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p><u>3. 제1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 무원의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한 자</u></p> <p>4. ~ 6. (생 략) ③ (생 략)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